

## 경운대학교 대학혁신원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교육의 혁신적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운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라 한다)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한 교육체제와 경영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승선학원 「정관」 제79조제3항, 제5항 및 제80조, 경운대학교 「학칙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① 대학혁신원은 교육혁신본부와 경영혁신본부를 둔다. <개정 2020.12.01.>

② 교육혁신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12.01.>

1. 교육 정책수립

- 가.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진단, 개선 혁신기획 및 정책방안 수립
- 나. 교육 정책 및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
- 다. 교육 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수주 지원

2. 교육과정(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) 개발·분석 및 평가·환류 및 개선

- 가. 교육 혁신모델 개발 및 확산
- 나. 교육과정 운영성과 분석 및 교육만족도 조사/분석
- 다. 교수·학습 지원 및 개발
- 라. 교육과정 개선방향 도출 및 기본계획안 수립
- 마. 강의개선을 위한 개선방향 도출 및 강의개선 기본계획안 수립
- 바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안 수립
- 사. 대학혁신원 지정강좌 운영

3. 국가재정지원사업 운영지원

- 가. 사업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나. 사업 성과관리 및 환류
- 다. 사업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계·조정

4. 기타 교육체제 구축 및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③ 경영혁신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1.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방안 수립
- 2. 법인 정관, 대학 학칙 및 규정류 정비 제안
- 3. 교직원의 임면 등 인사와 관련된 업무
- 4. 경운대학교 대학평의원회,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
- 5. 행정업무 운영, 조직 및 업무 개선
- 6. 기타 경영체제 구축 및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2조의2(지정강좌)** 교육과정 품질개선 및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을 위해 대학혁신원 지정강

좌를 선정하며,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12.01.]

**제3조(조직)** ① 대학혁신원장은 각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각 본부장은 해당 본부를 운영하며 우리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교육혁신본부에는 교과 혁신부, 비교과 혁신부, 성과 및 평가혁신부를 두며, 각부의 부장은 우리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각 본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.
- 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업무는 교육혁신본부장이 관장한다. <신설 2020.12.01.>

**제4조(보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관련 제규정을 따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0.12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